

조세 재정

2016. 6. 1(통권 제30호)

BRIEF

국가 및 지방공기업 등의 회계기준 개선

정성호 초빙연구위원



BRIEF

국가 및 지방공기업 등의 회계기준 개선

정성호 초빙연구위원(044-414-2551)

I. 배경 및 문제점	02
II. 조사 및 분석결과	03
III. 정책제언	13
IV. 기대효과	14



I 배경 및 문제점

- ● (배경)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일관된 회계기준 정립은 관리의 체계성 제고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며,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적용 가능한 회계사무규칙이 없는 실정임
 - 국가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으로 구분하고 있음
 -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각 회계실체들은 적용 회계기준이 서로 다름
 - 국가 공공기관은 시장형(상장형)의 경우 K-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공기업(비상장 시장형, 준시장형)과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형은 다른 법령(특별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K-IFRS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K-IFRS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미함
 - 그 외 기금관리형(순수 기금(기금회계, 기금) 준정부기관은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문제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시장형(상장형) 공기업은 K-IFRS를 적용하고 그 외 대부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기준, K-IFRS 순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상 기금회계는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일관된 회계기준이라 보기에는 다소 제한적임
 -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 (문제점) 지방공기업은 회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는 실정임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업회계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은 시행령에서 언급한 기업회계원칙이란 기업회계기준을 의미하며,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에 포함되는 직영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 직영기업과 도시공사·공단 회계처리규정을 동일하게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임
- 정부재정통계(GFS, PSDS)시 일반정부단위(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공공기관 까지 포괄)의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템플릿을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되고 있음

II 조사 및 분석결과

- (중앙정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적용하여 통일된 회계기준을 갖추게 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국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 공운법이 2007년에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으로 이원화되었던 공공기관이 통합관리·지정되기 시작하였으며¹⁾,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적용하여 통일된 회계기준을 갖추게 됨
 -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 국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적용체계는 공운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을 적용하며, 국가회계, 다른 법률(특별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K-IFRS 순으로 적용됨

1) <http://www.alio.go.kr/alioPresent.do>, 검색날짜: 2016.5.3.

[그림 1] 국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회계 적용체계



- ● (중앙정부) 2016년 기준 공공기관은 323개이며, 상장형 공기업(3개)은 K-IFRS를 적용하고, 비상장시장형과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K-IFRS 순으로 적용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기금계정)은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기금계정+고유계정)은 위에서 열거한 기준 순서대로 적용함
- ● (중앙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1항에서 「공운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표 1〉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적용에 따른 회계기준

구 분 (2016년 기준 323개)			적용회계기준
공기업 (30개)	시장형	상장(3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¹⁾
		비상장(11개)	다음 순으로 적용 ① 다른 법령 ②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기준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준시장형	비상장(16개)	
준정부기관 (90개)	위탁집행형(74개)		국가회계 ²⁾
	기금관리형 (16개)	기금계정(6개) ³⁾	
		기금계정+고유계정(10개) ⁴⁾	다음 순으로 적용 ① 다른 법령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타공공기관(203개)			사무규칙 적용대상이 아님

주: 1)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공운법에 우선 적용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완전히 적용

2)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은 국가회계실체의 일부이므로, 국가회계를 적용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4)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표 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2015-25)

조항	내용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원칙
	제 3조	내부통제
	제 4조	회계관계 업무의 위임
	제 5조	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제 6조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조항		내용
제1장 총칙	제 7조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제 8조	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 등
	제 9조	회계서류의 보관
	제 10조	세부기준 및 결산지침
제2장 회계장표	제 11조	거래의 처리
	제 12조	장표의 양식
	제 13조	전환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제 14조	전표의 내용
	제 15조	전표의 대용
	제 16조	회계장부의 종류
	제 17조	기장사무의 분리
	제 18조	장부의 기재요령
	제 19조	증빙서류의 범위
	제 20조	증빙서류의 생략
	제 21조	증빙서류의 작성
제3장 금전회계	제 22조	금전출납의 범위
	제 23조	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제 24조	출납마감
	제 25조	현금보관의 금지
	제 26조	금전의 과부족 처리
	제 27조	수표 및 어음행위
	제 28조	수입사무의 분리
	제 29조	수입금의 징수
	제 30조	수입금의 수납
	제 31조	과오납금처리
	제 32조	장기미납금의 처리
	제 33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제 34조	지출원인행위결의서의 작성
	제 35조	지출원인행위의 증감취소
	제 36조	일상경비
	제 37조	선금금 및 개산금의 지급
	제 38조	잔액조회

조항		내용
제4장 회계	제 39조	재무상태표 등
	제 40조	재무상태표 등의 작성기준
	제 41조	자산의 분류
	제 42조	부채의 분류
	제 43조	자본의 분류
	제 44조	정부보조금 등의 처리
	제 44조의 2	잔여 정부보조금 등의 처리
	제 44조의 3	위탁자산의 처리
	제 45조	손익계산서 등
	제 46조	손익계사서 등의 작성기준
	제 47조	손익계산서 등의 기본구조
	제 48조	위탁사업비의 인식
	제 4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제 5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 51조	현금흐름표
	제 52조	현금흐름표 등의 구분표시
	제 53조	자본변동표 등
	제 54조	자본변동표 등의 구분
	제 55조	결산총평
	제 56조	주식
	제 57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주식
	제 58조	부속명세서
	제 59조	기자채취득을 위한 사전검토
	제 60조	유형자산의 처분결정
	제 61조	권리보존
	제 62조	보험의 가입
	제 63조	자본금의 전입 및 감자
	제 64조	결산정리
	제 65조	불확정 채권 채무의 정리
	제 66조	정부의 마감 및 이월
제 67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조항	내용	
제5장 해외사무소	제 68조	적용범위
	제 69조	임시해외사무소등의 회계처리
	제 70조	잠정보고
	제 71조	증빙서류 장표의 보관 및 보존
	제 72조	자금의 집행
	제 73조	자금의 차입
	제74조	정산환율
	제 75조	고정자산의 현황보고
	제 76조	감가상각
	제 77조	재검토기한

자료: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lw/denm/detailTbDenmView.do?menuNo=7020000&searchNttId1=0LD_4096855&searchBbsId1=MOSFBBS_00000000120, 검색날짜: 2016.5.3.

- ● (중앙정부)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정부보조금, 정부위탁사업비 및 정부위탁자산에 대한 규정 중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일관성을 기함 (최근 개정)
 -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은 2가지 자산처리방법을 모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계처리 방법이 혼용됨에 따른 회계적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각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의 방법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
 -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 복수 선택 금지(제44조)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도입한 “국제회계기준(K-IFRS)”에 반하여 미실현 수익을 당기 손익에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46조 단서를 삭제하여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제고함
 - K-IFRS와 상충되는 부분 삭제(제46조)
-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회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며,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상세 내용은 법적 성격이 아닌 별도의 지침(클린아이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및 결산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직영기업)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이지만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도 K-IFRS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보류 중에 있음

구분	관련 법령	회계기준
지방직영공기업 ¹⁾	지방공기업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업회계원칙
지방공사·공단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제1항, 제 76조 제2항	기업회계원칙

주: 1) 직영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회계실체이지만 지방자치단체회계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준하는 법령은 지방공기업 시행령인데, 이 시행령에서 설립·운영·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와 회계 사무처리에 대한 사항이 일부 열거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도 일부 회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함

〈표 3〉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조항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지방 직영기업의 범위
	제2조의2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3조	관리자의 임기
	제4조	2 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제5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6조	회계처리방법
	제7조	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제8조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제9조	자산 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제10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조항	내용
제11조	계정의 구분
제12조	자산
제13조	부채
제14조	자본
제14조의2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제15조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제16조	선수금
제17조	원가계산
제18조	요금의 산정방식
제19조	예산의 기재사항
제20조	예산안의 제출
제21조	예산의 집행
제22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제23조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제24조	예산의 이월승인신청
제25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제26조	현금출납사무취급금융회사의 지정
제27조	지정 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제28조	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제29조	수표에 의한 지급
제30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제31조	일상경비의 지급 등
제32조	지정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3조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제34조	계좌대체의 방법예의한 납부
제35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36조	결산서의 제출 등
제37조	이익의 처분
제38조	자본잉여금의 처분
제39조	결손의 처리
제40조	적립금의 자본전입

조항		내용
제2장	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제42조	자산의 평가
	제43조	삭제
	제44조	경영공시 등
	제44조의2	통합공시
	제45조	사무인계
	제46조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제3장	지방공사·지방공단	
	제47조	설립 타당성검토 등
	제47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검토 등
	제48조	정관기재사항
	제49조	설립등기
	제50조	지사의 설치등기
	제51조	이전등기
	제52조	변경등기
	제53조	등기의 신청
	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55조	이사
	제56조	삭제
	제56조의2	사장의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6조의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제57조	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57조의2	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제57조의3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57조의4	회계처리 등
	제57조의5	국제입찰대상도시철도공사의조달계약의범위
	제57조의6	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
	제57조의7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제5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조항		내용
제3장	제58조의2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제60조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1조	이익금의 처리
	제62조	사채발행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
	제64조	지방공사의 경영공시 등
	제65조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66조	공단의 설립 운영
	제67조	비용의 부담 등
제3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신설2002.6.19>	
	제67조의2	삭제
	제67조의3	삭제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제68조	경영평가
	제68조	삭제
	제69조	제출서류
	제70조	경영진단대상 등
	제71조	지방공기업 경영진단반
	제72조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3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제74조	수당 등
	제75조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제5장	보칙	
	제76조	경영지도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A7%80%EB%B0%A9%EA%B3%B5%EA%B8%B0%EC%97%85%EB%B2%95#undefined>, 검색날짜: 2016.5.3.

-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제16조 제1항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동일 내용이 법과 시행령에 분산되어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16조 제1항에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라고 규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지방 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
-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조항 일부개정 필요(법 16조 제1항에 통합), 「공기업법 시행령」 제6조는 삭제

Ⅲ 정책제언

- ● (제안1)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개정 또는 기타공공기관 회계사무규칙 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개정 또는 기타공공기관 회계사무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 적용되지만,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처리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 회계사무규칙을 제정하여 회계처리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타공공기관 회계처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거나 기타공공기관 회계사무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 기타공공기관을 관리할 단일 주무부처(예, 기획재정부) 지정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해당 주무부처 소관임) 왜냐하면 회계사무규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제외되고 있기 때문임
- ● (제안2)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적용 검토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임(공기업특별회계)을 감안할 때 기업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재무정보의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에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등의 적용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인데,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을 구분하여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활용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예산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 (제안3) 「지방공기업법」 등 일부 개정 및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회계사무규칙 제정
 - 「지방공기업법」 조항 일부 개정(제16조) 필요
 - 「지방공기업법」 일부 조항 개정 필요(「지방공기업법」 제16조 제1항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 회계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 사실에 따른 회계거래는 기업회계 원칙을 따른다.”로 개정할 필요)
 -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
 - 직영기업을 제외한 지방공사·공단은 별도의 지방공기업 회계사무규칙을 규정하여 회계처리 사항과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상세사항은 회계기준에서 언급하도록 하여 관리의 체계성을 제고할 필요
 - 「지방공기업법」 및 결산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사무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기업법」에도 일부 회계처리에 관한 조항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함

IV 기대효과

-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는 기타공공기관이 제외되어 있는데, 공기업·준정부 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 또는 기타공공기관 회계사무규칙을 제정하여 회계처리 및 사무 관련 상세사항을 규정하여 회계관리의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함
- ●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직영기업과 도시공사·공단을 구분하여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

체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도시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 회계사무규칙을 제정하여 회계처리 및 사무관련 상세사항을 규정하여 회계관리의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기대효과(기타 공공기관)

- (근거력) 현행 체계로는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법적 근거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회계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회계기준의 일관성이 저해됨
- (신뢰성) 통일된 회계처리가 없는 경우 기타공공기관들이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작성할 유인이 없으며 회계수치 조정 등의 유인이 증가할 것임
 -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할 수단이 없음
- (통일성) 재무정보의 일관성 확보와 정부재정통계 재무지표 산출시 전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
 - 특히 정부재정통계(GFS, PSDS) 시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되고 있음
- (개선성) 회계기준의 제정으로 재무구조 개선, 재무정보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 기대효과(지방공기업)

- (근거력) 현행 지침으로 회계기준을 정할 경우 법적 근거력이 약할 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담당자 변경 등에 따라 회계기준의 일관성이 저해됨
- (신뢰성) 정부의 지원여력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시장차입, 출자 주식 등의 필요성 증대,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통일된 회계처리가 없는 경우 분식회계, 회계수치 조정 등의 유인이 증가하며 이를 예방 및 평가할 도구가 없음
- (통일성) 재무정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이며, 또한 정부재정통계 재무지표 산출 및 경영평가지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전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정보의 사용가치가 저해될 수 있음

- 정부재정통계(GFS, PSDS)시 지방공기업도 그 대상이기 때문에 통일된 회계기준 정립이 필요함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 명확한 회계기준 정립이 필요함
- (개선성) 회계기준의 정비로 누적되는 정보는 지방공기업의 특수한 거래유형에 따른 회계기준의 개선 및 재무구조 개선방향 등으로 연결되어 재무정보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 참고문헌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해당 법령 및 시행령 등 검색.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알리오, <http://www.alio.go.kr>.



BRIEF

국가 및 지방공기업 등의 회계기준 개선

2016. 6. 1(통권 제30호)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 전 화 : 044-414-2503
 - 팩 스 : 044-414-2509
 - 인쇄처 : (주)참기획
-

